

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[2003. 12. 15 조례 제54호]

개정 2007. 11. 23 조례 제 264호
일부개정 2013. 2. 22 조례 제 473호
전부개정 2016. 10. 14 조례 제 691호
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2. 2. 4 조례 제1026호
(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라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2. 4>

제2조(위치) 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.

부칙(2016. 10. 14 조례 제691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2. 4 조례 제1026호, 증평군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
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증평군 사무소의 소재지(제2조와 관련)

사무소명	소재지	비 고
증평군청	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	
증평읍 행정복지센터	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	
도안면 행정복지센터	증평군 도안면 문화마을길 8	